



명쾌한 수다

헬스클럽 시설 주체가 임의로 회비를 인상할 수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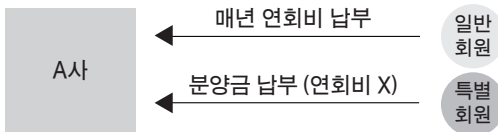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스포츠센터 운영 주체가 일반회원과는 다른 조건으로 회원권을 가지게 된 특별회원들에게, 임의로 연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 목표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포츠센터 운영 주체가 회원들에게 더 높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A주식회사는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회원 중에는 일반회원보다 비싼 가입비를 내는 대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도 되는 조건의 특별회원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몇 년간 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약 4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특별회원들에게 연회비 191만 원을 납부하거나 보증금 4,775만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해당 스포츠센터가 개관되었을 때부터 시행되었던 회칙 제17조를 근거로 피고가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으며, 원고인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칙 제17조]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단, 기납부된 회비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

스포츠센터가 개관한 후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2배, 3배 상승한 반면, 금리는 연 10%에서 3% 수준으로 하락한 점, 피고 시설 증·개축으로 공사비가 지출된 점,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같은 기간 동안 약 8배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관례는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개관 이후 시설 보수 공사 전까지 물가는 약 2배 상승, 연 금리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특별회원들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인상된 것이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특별회원들로부터 연회비 면제를 조건으로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은 것은 스포츠센터 개관 당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물가 상승이나 금리 하락만으로는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개선으로 특별회원들이 예상치 못했던 이익을 얻게 된 것을 감안하여 공사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피고가 요구한 금액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률이야기)